

계룡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안

의안 번호	75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03. 11. 10.

제안자 : 이정기 의원외 2 인

1. 제안이유

○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함(안 제2조)
- 나. 의회사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(안 제3조)
- 다. 전문위원 직급과 사무분장을 정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○ 계룡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제6조.

계룡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안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계룡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과장의 직급)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3조 (사무분장) 의회사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
2. 문서, 보안,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
3.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
4. 의회청사시설,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
5. 의회경비 및 방청, 참관,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
6.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
7.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
8. 의정보도자료 수집,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
9. 각종 회의록 작성, 보관,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
10. 각종 의안의 접수, 인쇄, 배부, 이송 등 처리종합
11.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
12. 의결문서의 보존, 발간, 이송 등 처리 총괄
13. 청원, 진정서의 접수, 분류 및 처리
14.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4조 (전문위원) ①계룡시의회의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안, 예산안, 청원등 소관안전에 대한 검토보고
2.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
3.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
4.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의사진행 보좌
5.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주관 공청회, 세미나, 간담회 등 운영
6. 기타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